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합574033 판결 [연대보증금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여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수, 박단비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4.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15억 원을 대여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말일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 3. 3억 원을, 2021. 1. 3. 5억 원을, 2022. 1. 3. 7억 원을 각 상환하되, 소외 회사가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원금 상환을 연체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원고에게 원리금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는 당시 보증한도액을 18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여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9. 7. 3.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소외 회사는 늦어도 이자 지급을 2회 연체한 2019. 1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18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7.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고무장갑을 생산하여 납품하여 왔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①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결정하였고, ② 제품의 할인행사를 강요하고 대금을 상계 처리하거나 위 납품거래를 중단할 것 같이 위협을 가하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으며, ③ 고무장갑의 원자재 가격이 낮은 시기에 고무장갑을 대량 발주한 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고무장갑을 실제 납품받는 선매입거래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호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2) 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 위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12,061,223,391원(= ① 주장 관련 손해 7,085,179,157원 + ② 주장 관련 손해 2,941,170,916원 + ③ 주장 관련 손해 2,034,873,31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12,061,223,39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채권을 상계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7. 4.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5억 2,000만 원, 원고가 5억 원을 각 투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고무장갑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6조(투자금의 수익지급 및 납품가격)

3. 원고는 피고의 시장 전개 전략에 따라 연간 공급량의 1/3 수량을 할인 공급한다.

1) 할인 공급조건은 연말 결산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최소 마진율 3%를 보장한 나머지에 대해 전액 지원한다.

2) 지원 시기는 연 4회로 하고 시기와 수량은 피고가 요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소외 회사는 2008. 1.경부터 2020. 2.경까지 원고에게 고무장갑을 생산하여 납품하였는데, 양사 사이에 별도의 추가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의 위법성에 관하여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 · 거래규모 · 규격 · 품질 · 용도 · 원재료 · 제조공법 · 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주장은 원고가 2008. 1.경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고무장갑에 대하여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1인의 수급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납품하는 고무장갑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단가 인하에 불과하고, 설령 위 고무장갑이 다수 품목으로 구분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4. 28.자 투자계약 제6조가 일정한 할인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고무장갑의 종류나 규격 및 원재료 등 개별적인 사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일방적으로 적용한 낮은 단가의 위법성에 관하여

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4 내지 35, 3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고무장갑 대금이 동종 제품의 평균 단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대금 감액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 3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2007. 4. 28.자 투자계약 제6조의 내용을 벗어나 고무장갑의 할인행사를 강요하고 대금을 상계 처리하거나 위 납품거래를 중단할 것 같이 위협을 가하여 대금을 감액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하도급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선매입거래 방식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선매입거래 방식에 의하더라도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피고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불과한데, 앞서 든 증거만으로 위 ‘거래대금’이 피고가 지출하는 원자재 가격, 직접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도 보기는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D의 지분 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7조는 위 지분이 ‘담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원고가 위 계약 제6조에 따른 연대보증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위 계약 제7조에 따른 담보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김성준, 판사 이진희

1)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법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